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065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진흥·지원·전문기관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하고,
-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 서울마이칼리지 운영,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개발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 사업,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7학년 교실 운영
-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동남권·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특화과정 운영, 커뮤니티/일자리연계 지원, 홍보 및 행사 운영,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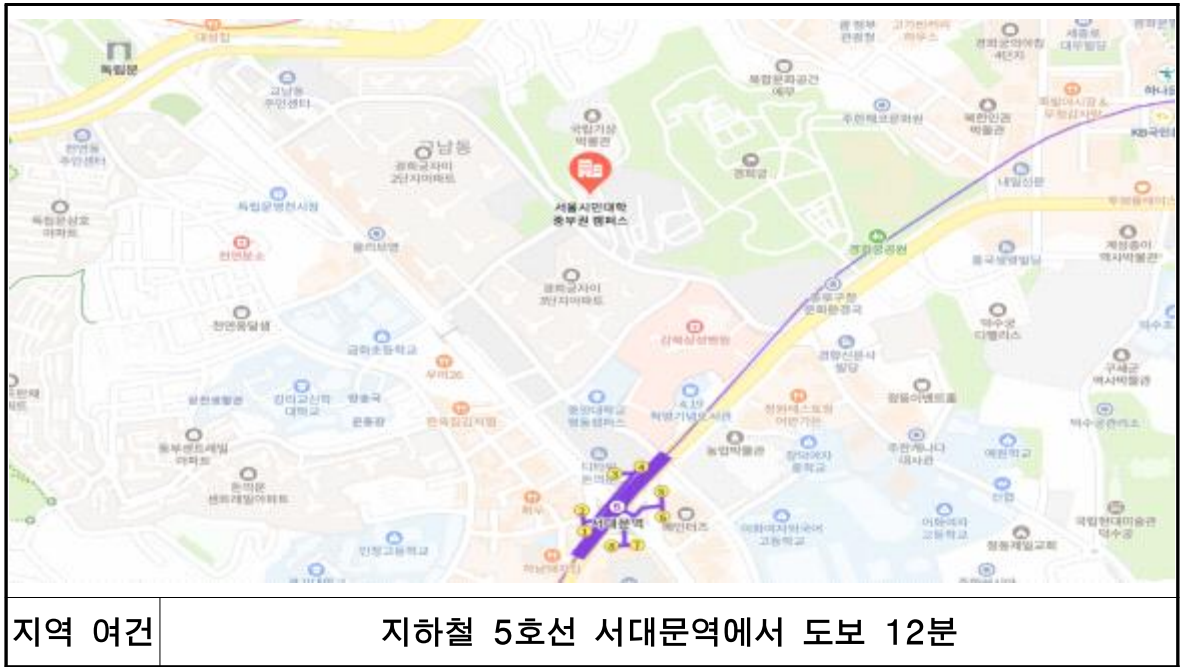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 m^2 (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 위치도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18년 3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52
- 시설규모 : 1,485 m^2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등)
- 위치도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21년 4월 개관)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399
 - 시설규모
 - 지상 7,211 m^2 (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지하 4,600 m^2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 위치도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 캠퍼스('17년 10월 개관)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시설규모 : 2,462.91 m^2 (강의실, 다목적홀, 도서공간 등)
- 위치도



○ (가칭)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25년부터 운영 예정)

- ※ '24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를 '25년부터 서울특별시 평생 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낙성대로 70 (현 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 시설규모 : 7,040 m^2 (강의실, 커뮤니티실, 공유오피스 등)
- 위치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붙임1)

○ 출연금액 : 13,223백만원

- 인건비 4,192백만원, 운영경비 2,048만원, 사업비 6,356백만원, 예비비 627백만원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사. 이사회 결의서 : 붙임2

아. 결산보고서 : 붙임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본부 10팀 1센터, 총 73명(일반직 56명, 기능직 17명)으로 구성(2024년 7월 기준)하여, 총 107억 9백만원(출연금 88억 4천 5백만원, 보조금 사업비 2억 9천 2백만원, 내부유보금 5억 4천 6백만원, 전기이월금 9억 1천만원 등)의 예산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 설립등기일 : 2015. 3. 12.
 - 명 칭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위 치
 - 본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서울시민대학 모두의학교캠퍼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서울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99 104동 2~4층
- 설립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설립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독자적 사업영역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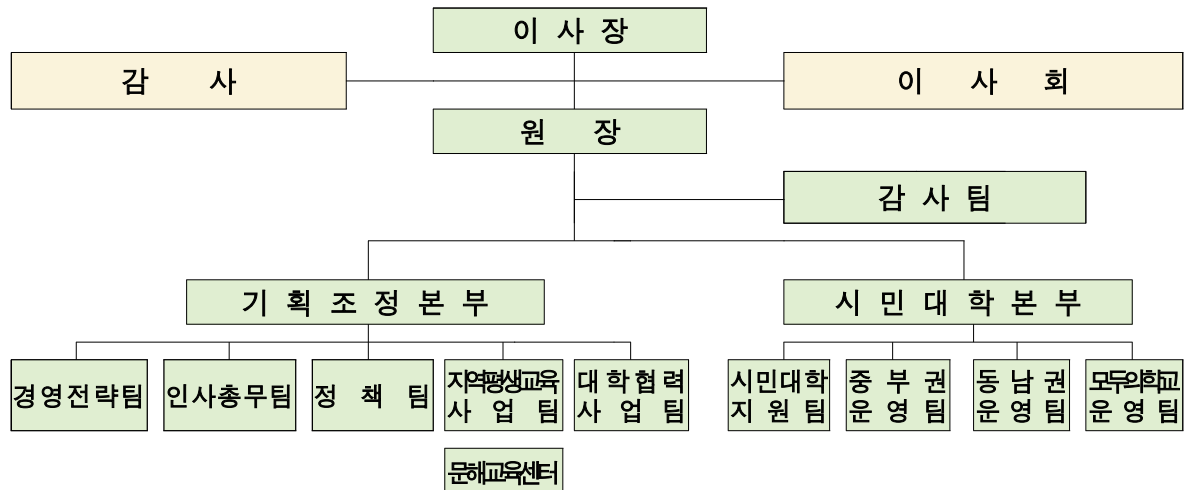
〈 평생교육진흥원 연혁 〉

- '14.04.03. :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 '14.10.30. : 법인설립 준비위 창립총회
- '15.03.05. : 독립 재단법인 설립 및 제1대 김영철 원장 취임
- '15.05.14. : 조직개편(1국 3팀 : 사무국 → 기획조정국)
- '17.10.28. : 모두의학교 개관
- '17.12.27. : 조직개편(1국 4팀 → 2국 6팀)
- '18.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운영
- '19.07.05. : 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 '20.01.01. : 서울자유시민대학 고유업무 전환
- '20.02.27. : 조직개편(2국 7팀 1센터 → 2국 8팀 1센터)
- '20.12.23. : 조직개편(2국 8팀 1센터 → 2국 9팀 1센터)
- '21.04.05. :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운영
- '22.02.28. : 조직개편(정책팀 신설, 경영전략팀/인사총무팀 분리, 팀명칭 변경)
- '24.02.29. : 조직개편(2국 9팀 1센터 → 2본부 10팀 1센터)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24.7.31.기준) 〉

- 조직 현황: 2본부 10팀 1센터



- 인력 현황 : 현원 73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정 원	77	59	1	2	10	19	27	18
현 원	73	56	0	1	10	19	26	17
과부족	△4	△3	△1	△1	-	-	△1	△1

※ 정원 외 인력 : 기간제근로자(2명)

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의 2025회계연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년(88억 4천 5백만원) 대비 49.5%(43억 7천 8백만원) 증액한 132억 2천 3백만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2025회계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 사업비는 전년(42억 6천만원) 대비 67.1%(28억 6천만원) 증액한 71억 2천만원 규모이고, 일반관리비는 전년(53억 2천만원) 대비 17.3%(9억 2천만원) 증액한 62억 4천만원이며, 예비비는 전년(2억 2천만원) 대비 185.2%(4억 1천만원) 증액한 6억 3천만원임.

※ 예비비의 증액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다시가는 캠퍼스)으로 전환함에 따라, 고용 및 채용될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의 규모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여짐.

〈 2025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

(단위:천원)

	2024년	2025년(안)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8,845,281	13,222,910	4,377,629	49.5%
내부유보금	109,000	153,000	44,000	40.4%
순세계임여금	837,279	610,170	△237,109	-28.0%
총계	9,801,560		935,074	9.2%
고유사업비	4,260,199	7,119,165	2,858,966	67.1%
일반관리비	5,321,659	6,240,369	918,710	17.3%
예비비	219,702	626,546	406,844	185.2%

〈 2025년 평생교육진흥원 세부 예산편성(안) 〉

(2024년 7월 기준,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교육	9,801,560	13,986,080	4,184,520	42.7%
고유사업비	4,260,199	7,119,165	2,858,966	67.1%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716,000	899,440	183,440	25.6%
① 서울마이컬리지 운영(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	664,760	624,595	-40,165	-6.0%
② 대학연계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확산	51,240	274,845	223,605	436.4%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711,580	920,390	208,810	29.3%
	①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493,140	568,900	75,760	15.4%
	②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18,440	351,490	133,050	60.9%
	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457,970	539,145	81,175	17.7%
	①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38,250	93,460	55,210	144.3%
	②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지원사업	39,500	66,725	27,225	68.9%
	③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325,200	310,890	-14,310	-4.4%
	④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55,020	68,070	13,050	23.7%
	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783,395	662,220	-121,175	-15.5%
	① 중부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239,490	197,780	-41,710	-17.4%
	②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87,950	230,950	43,000	22.9%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41,690	141,690	-	0.0%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사업명 변경 → 4050)	122,465	-	-122,465	-100%
	④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91,800	91,800	-	0.0%
	5. 시민대학 특화사업 운영	346,150	692,455	346,305	100.0%
	① 중부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79,720	79,720	100.0%
	②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181,590	207,535	25,945	14.3%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124,060	124,060	-	0.0%
	④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신설)	-	143,680	143,680	100.0%
	⑤ 7학년 교실 운영(신설)	-	137,460	137,460	100.0%
	④ 시민대학 공간활용 교육과정 운영(일몰)	40,500	-	-40,500	-100%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404,240	430,875	26,635	6.6%
	①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80,665	180,665	-	0.0%
	②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40,635	63,270	22,635	55.7%
	③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27,410	27,410	-	0.0%
	④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155,530	159,530	4,000	2.6%

분야/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840,864	818,856	-22,008	-2.6%
	① 중부권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282,056	206,840	-75,216	-26.7%
	② 동남권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364,833	418,041	53,208	14.6%
	③ 모두의학교 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193,975	193,975	-	0.0%
	8. 다시가는캠퍼스(관악북합평생교육센터) 운영	-	2,155,784	2,155,784	100.0%
	① 다시가는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	191,350	191,350	100.0%
	② 다시가는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	348,520	348,520	100.0%
	③ 다시가는 캠퍼스 커뮤니티/일자리 연계 지원	-	49,500	49,500	100.0%
	④ 다시가는 캠퍼스 홍보 및 행사 운영	-	112,000	112,000	100.0%
	⑤ 다시가는 캠퍼스 시설 및 공간관리	-	1,454,414	1,454,414	100.0%
	일반관리비	5,321,659	6,240,369	918,710	17.3%
	일반관리비	5,321,659	6,240,369	918,710	17.3%
	인건비	3,719,168	4,192,059	472,891	12.7%
	운영 경비	1,602,491	2,048,310	445,819	27.8%
	예비비	219,702	626,546	406,844	185.2%
	예비비 (정-현원차 예비비)	219,702	626,546	406,844	-87.6%
	인건비	201,006	27,346	-173,660	-86.4%
	운영 경비	18,696	-	-18,696	-100%
	예비비	-	506,037	506,037	100.0%
	인건비	-	506,037	506,037	100.0%
	운영 경비	-	93,163	93,163	100.0%
* 2024예산은 당초예산으로 표기 * 증감률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학습 인프라 강화, 학습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평생학습생태계 구현 등을 출연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서울시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금 증액의 주요 원인은 ‘다시가는 캠퍼스(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으로,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²⁾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되어, 2025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이 2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주식회사 외대어학연구소)의 사업 운영 성과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 능력 문제도 낮게 평가되어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운영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타 평생교육시설 대비 이용자수도 현저히 적어,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운영방향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평생교육국은 고유사업 전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업 전환 추진계획’ 중 발췌〉

□ 추진배경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 성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시설 운영 능력 문제로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운영방식 전환 필요
 - 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63.8점으로, 민간위탁 지침 상 재계약을 배제하고 재위탁이나 직영 전환 등 검토 대상임 ※ 대상 기준 : 75점 미만

운영 평가 결과

- ▶ '23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예산담당관-13360(2023.11.13.)) : ‘매우 미흡’, 55점

<외부전문가 주요 개선 의견>

- 사업목적·목표 및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이 제공됨
- 향후 사업 전반의 운영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하는 노력 필요

- ▶ '24년 제2차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7018(2024.7.5.)) : 63.8점

<개선 요청사항>

- 최근 2년간 지적 및 지도점검 받은 사항은 개선·조치하였으나, 미흡 부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
- 성과지표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취업, 자격증 취득 등 성과 확인 및 조사가 필요

- 특히, 타 평생교육시설 대비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저조하여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운영방향 전면 개편 필요

⇒ 평생교육 분야 전문성이 높고, 캠퍼스 운영실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조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선 위탁 근거가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고유사무로 전환

2)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현황

위탁사무명	위탁사무 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민간위탁금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관악 복합 평생학습공간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시설·관리 등	(주)외대어학연구소	'22.7.6.~'24.12.31	1,252백만원

- 2024년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결과는 63.8점('24년. 7월)으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배제하고 재위탁 또는 직영 전환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되어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므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중 발체 112p〉

7절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실시

2) 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 평가 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페널티 기준으로 적용
 -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재위탁(공모 또는 수의)이나 직영 전환 등 검토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첫째,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와 통제를 받지만,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출연기관으로 이전되면, 본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약화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둘째, 세부사업의 성과 상향을 위해 출연기관으로 사무를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출연기관 간의 업무 중복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출연기관으로의 업무전환이 항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바, 적절한 운영계획의 수립, 운영능력의 확보 등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 셋째,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력이 강화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여 효율적 운영이 저하될 수 있는바, 서울시 사무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출연기관의 고유사무로 전환하는 결정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평생교육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49.5% 증액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출하였음.

〈 2024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내역 〉

연도	의뢰일	심의일	심의결과
2024	미정	미정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과 그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의회에서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전년대비 출연금의 증액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여, 출연 동의 전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 출연기관의 차년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와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 타 기관들과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는지 여부, 출연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보유와 이를 활용할 역량이 있고, 적극적 활용이 있는지 여부, 사업 추진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출연기관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여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러한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하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상태로 시의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임 재 빈